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인도네시아, 수입납세자번호, HS코드 명기 의무화



- 자카르타 판중 뿌리옥 항구 5월 23일 도착 화물 부터 적용. 인도네시아 세관은 최근 세관에 제출하는 적화목록에 수입자의 납세자 등록번호와 화물의 HS코드 (국제상품분류번호) 기재를 의무화한다고 밝힘
- 적화목록 작성 주체인 선사와 물류기업(포워딩업체)는 실화주에 BL(선하증권), 수하인 란에 납세자번호, 상품 란에 HS코드를 기재하도록 함
- 자카르타의 판중 뿌리옥 항으로 수입되는 화물은 5월 23일 도착 분부터 적용 되었으며, 스마랑과 수라바야 등의 항만도 순차적으로 기재 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 현지 해운업계 관계자는 "적화목록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으면 수입허가가 나지 않는다"며 "선사가 적화목록을 작성하지만 정정 비용 등은 화주에게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함

- 신규 제도 설명 (자료 제공 : PT. ITL GLOBAL TRANS)
 - 금번 인도네시아 세관의 적하목록(M/F) 신고 모듈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 규정이 시행될 예정임
 1. 시행일 : 2018년 5월 23일 자카르타 판중 뿌리옥 입항 선박부터 적용
 2. 변경사항
 - (1) M.B/L & H.B/L Consignee 하단에 수탁인의 NPWP 명시
 - * NPWP(Nomor Pokok Wajib Pajak / 납세자번호)
 - (2) M.B/L & H.B/L Description란에 품목별 HS CODE 명시(대분류 HS CODE 앞 4자리만 기재)
 - (3) Description 란에 품명을 구체적으로 명기

* 출처 : 2018년 5월 31일, 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무역부

2. 비식품으로 확대되는 할랄시장

-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 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율(87%)이 높아 기업들이 할랄(Halal) 인증 품목을 늘리는 추세 속에 냉장고와 질밥(머리에 두르는 스카프) 등 식음료 제품이 아닌 품목들로 할랄 마케팅이 확대되고 있음
- 일본계 전자회사 샤프전자 인도네시아(이하 샤프)는 라마단(금식기간)을 앞두고 할랄 인증 냉장고를 출시했음. 샤프는 냉장고가 음식을 보관하는 도구인 만큼 할랄 제품이어야 한다면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할랄 인증을 받은 냉장고라고 설명함
- 일부 소비자들은 직접 먹는 음식이 아닌 품목에 할랄 인증을 붙였다며 할랄 냉장고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드러냄
- 인도네시아 일부 소비자는 할랄 냉장고의 의미는 냉장고를 만든 원부자재가 할랄이라는 뜻인지, 마케팅 수법인지 혼란스러움을 표하며, 식품과 화장품에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은 보았지만 전자제품에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은 처음 보았다고 함

-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할랄인증기관)는 식품과 화장품 이외의 제품에 할랄 인증을 받는 품목이 늘고 있다고 밝힘
- 2016년 질밥 브랜드인 조야(Zoya)가 업계 최초로 할랄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를 했으며, 당시 서부자바 반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사 제품은 할랄이고 다른 업체의 제품은 하람이라고 말했다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도 함
- 비식품, 비화장품 중 할랄인증 받은 제품으로 소프텍스 생리대, 토탈 알미라 세제, 파워켓 고양이 사료, 메디나 플라스틱 사물함 등이 있음
- LPPOM MUI(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의 루크마눌 하킴 위원장은 비식음료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신청이 늘고 있지만, MUI로서도 냉장고에 대한 할랄 심사는 처음이라고 말함. 기업이 할랄 인증에 대해 문의하면 MUI는 인증 절차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면, 식품 심사처럼 제조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과 용기 등을 검사한다고 설명했다
- 루크마눌 하킴 위원장은 MUI는 제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할랄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평가한다며, 기업들이 할랄 인증을 받으려는 의도까지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건수가 2012년에 32,890건에서 2017년에 127,286건으로 급증했음. 마케팅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무슬림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비식음료 상품임에도 할랄 인증 제품을 취득하는 게 유행이라고 함
- 샤리아에 기초해 옷을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등을 고민하는 무슬림이 늘고 있음
- 2019년부터 할랄인증 표기의 의무화 시행 및 그 대상의 범위가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으로 넓어짐에 따라 할랄인증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일각에서는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할랄 인증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할랄 마케팅을 알뜰한 상술로 봄
- 일부 소비자들은 식음료와 화장품은 할랄 제품을 구입하지만 섬유유연제까지 할랄 제품을 사야 하냐고 반문하면서 과도할 할랄 인증은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릴 뿐이라고 밝힘

* 출처 : 2018년 5월 31일, 데일리인도네시아

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1.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제품 등록에 필요한 증빙 서류의 공증 여부

- 가공 식품 ML(수입식품등록번호) 등록에 필요한 제조사와 수출 회사의 공증 서류
 - Letter of Appointment(LOA) : 제품의 등록을 위한 현지 파트너사(수입업체)를 지정하여 위임 한다는 문서로 제조사에서 발급 시 한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공증을 필히 받아 제출
 - ▶ 수출사와 제조사가 다를 경우 수출사와 제조사간의 계약서를 추가 공증 제출 하여야 함
 - CFS(Certificate of Free Sale) : 자유 판매 증명서
 - ▶ 해당 서류는 한국 지방 식약청(제조사 주소지 관할)에서 발급 받아 이를 인니 식품의약품안전청(BPOM)에 제출 시 공증 필요 없음
 - HACCP / ISO 22000 : 공증이 필요 없으며 사본 제출 가능
 - ▶ 2016년 이전 발행된 한국 HACCP의 경우 유효 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BPOM에서 수령 거부 하고 있음. 최근 한국도 갱신이나 신규 발급받은 경우 유효기간을 표시 하고 있음

- 건강보조식품(SI) / 전통의약품(TI) 등록에 필요한 주요 서류 및 공증여부
 - Letter of Appointment(LOA) : 해당 위임장은 가공식품용 문서의 내용이 동일함. SI/TI 등록 시에는 해당 LOA의 원본이 필요
 - CFS(Certificate of Free Sale) : 자유 판매 증명서
 - ▷ 가공식품 등록과 달리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과에 공증이 필요함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 건강보조식품과 전통의약품 BPOM 등록 시 의무 제출 서류임
 - ▷ GMP는 공증 의무 대상은 아니나 BPOM 등록 접수 담당자에 따라 요구할 경우도 있음
 - * 한국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의 GMP는 "health functional food" 등급으로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BPOM)에 SMP(site master file)을 같이 제출 하여야 함
 - * SMF(Site master file) : 품목별 GMP 평가자료 표준화 및 간소화를 위해 의약품 제조회사 제조 및 품질관리 현황을 GMP 기준에 맞게 요약 정리한 문서로 주로 제약사에서 준비하는 문서임